

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

(제정) 1998-06-19 규정 제026호
(개정) 1998-11-23 규정 제042호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96호
(개정) 2001-04-26 규정 제113호
(개정) 2002-07-02 규정 제129호
(개정) 2003-03-03 규정 제132호
(개정) 2007-09-14 규정 제181호
(개정) 2009-05-18 규정 제205호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48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81호
(개정) 2013-06-25 규정 제323호
(개정) 2014-12-24 규정 제358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6-05-30 규정 제409호
(개정) 2017-03-22 규정 제453호
(개정) 2019-05-30 규정 제519호
(개정) 2019-12-17 규정 제53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0조에 의한 장학위원회의 운영,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장학위원회 설치) ①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장학위원회를 둔다.

② 장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<개정 2016.4.25>
2. 위원은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 및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5.30.>
3.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학생담당으로 한다.
4.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③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학업무와 관련되는 사항

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조(장학사정관) ①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.

② 장학사정관은 4~7인 이내로 구성하며, 학과교수 중 계열별 1~2인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장학사정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생에게 장학관련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
2.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학위원회에 추천
3. 급격한 가계곤란에 처한 학생 등 국가장학금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학생의 상담 및 장학위원회 추천

제5조(장학생 종류 및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년도 장학재원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복지성격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방법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자로 제한 할 수 있다.

제6조(장학생 선발) ① 장학생 선발은 교외장학생과 교내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.

② 교외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발기준에 따른다. 다만 국가장학 중 대학 자체의 운영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교내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년별, 학과별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발한다.

1. 신입생은 입학전형 순위에 의하여 선발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B⁺ 이상인 자로서 평점순에 의하여 선발한다. 단, 성적우수 C급 장학생은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발할 수 있다.<개정 2019.5.30.>

2. 평점이 같을 경우 총점 순위에 의한다.

3. 평점과 총점이 같을 경우 결강 시수가 적은 자로 선발한다.

④ 성적장학생 이외의 교내 장학생은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한 학생 중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⑤ 장학생이 제8조에 해당할 때에는 차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는 별도로 거치지 아니한다.

⑥ 그 외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 지급) ①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수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학기로 한다. 다만 전채수석 장학생의 수혜기간은 전학년으로 한다.

② 근로장학금은 매월 초 월별로 지급한다.

③ 장학금의 지급 방식은 등록 후 후불을 원칙으로 하되, 등록금 납부 전 지급이 가능한 장학금은 납부할 등록금에서 사전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환수)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경우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.

1. 미등록 휴학, 자퇴, 퇴학한 자

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
3.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자

4. 근로장학금 수혜자가 지급받은 해당학기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

제9조(장학금 수혜범위) ① 장학금의 수혜 총액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교내장학과 교외장학(국가, 지자체, 사설, 기타장학 등)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교외 장학을 우선지급하고 그에 따라 교내장학 수혜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의무 이행을 수혜조건으로 하는 장학(근로장학, 장애학생도우미 장학, 성적향상장학, 자기계발지원장학, 학생자치장학, 마일리지장학)<개정 2014.12.24.><개정 2017.03.22.>

2. 생활비지원 성격의 장학

3. 교외장학 지급기관이 정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

4.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5.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24>

제1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가. 부칙(1998. 6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'98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성적 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나. 부칙(1998.11.2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. 부칙(2000.10.19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라. 부칙(2001. 4.26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마. 부칙(2002. 7. 2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바. 부칙(2003. 3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사. 부칙(2007. 9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아. 부칙(2009. 5.18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. 부칙(2010. 5. 3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차.

카. 부칙(2013. 6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타. 부칙(2014.12.24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파. 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. 부칙(2016. 5.30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. 부칙(2019. 5.30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너. 부칙(2019. 12.17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〉

장학금의 종류		지급대상	지급액	
성적우수 장학생	전체수석	입학성적 최우수자 (매 학기 B 이상이어야 함)	등록금 전액(전학년)	
	A	학과성적(입학성적)수석자	등록금 전액	
	B	학과성적(입학성적)차석자	등록금의 50% 이상	
	C	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(입학성적)순 (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)	등록금의 30% 이상	
※ 공로 장학	학생 자치	A	학생회장	등록금 전액
		B	부학생회장, 대의원회의장 신문사편집국장, 방송사 실무국장	등록금의 60%
		C	학생회 부장, 대의원	등록금의 40%
	운동부	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	등록금 전액	
	기타	A	전국단위 이상 각종 대회(경연)에서 3위 이상 입상	300,000원
		B	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(경연)에서 3위 이상 입상	200,000원
보훈장학		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,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이상 자(본인은 성적무관)	등록금 전액	
북한이탈주민장학	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	등록금 전액	
생활보호장학	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 기 성적 C ^o 이상인 자	등록금 전액	
장애학생장학	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등록금의 60%	
	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등록금의 40%	
다문화가족장학		다문화가족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 ^o 이상	등록금의 40%	
다자녀가구장학		자녀 3인 이상인 가구 (만20세 이하)	등록금의 60%	
가족장학		가족 2인 이상 재학 시 1인 (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)	등록금 전액	
근로장학		성적이 C ^o 이상인 자(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이내)로 교내 및 사회기관(단체) 근로봉사자	국가근로 지급단가	
장애도우미장학		장애학생 도우미	국가근로 지급단가	
성적향상장학		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 1.0이상 향상자 (향상된 평점 최소 2.5이상)	200,000원	
자기계발지원장학		전공 관련 자격 취득, 어학점수 우수자 등 (지급대상 자격증 및 점수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)	400,000원 이내	
마일리지장학		「마일리지운영지침」에 따라 마일리지취득 점수가 우수한자	장학위원회에서 결정	
가계지원장학		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	장학위원회에서 결정	
특별장학		재해, 재난 등 긴급한 가계 곤란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학실정 및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	장학위원회에서 결정	
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	등록금지원 장학금	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·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.0이상인 자 (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)	등록금 전액 지원 (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인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수혜)	
	기숙사비지원 장학금	기숙사비 전액 지급	기숙사비 전액 지급	
	생활비지원 장학금	월 150,000원×12개월 =1,800,000원(매월 지급)	월 150,000원×12개월 =1,800,000원 (매월 지급)	
강원도민 성인 학습 지원 장학금		-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자 (자율모집에 한함)	입학 당해년도 (1년간) 등록금 전액 지급	

※ 공로장학(기타A,B)은 체육부원 제외,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학생에게 유리한 실적을 인정한다.

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수혜액을 배분하여 지급

※ 학생자치 공로장학은 수업일수 4분의 2를 초과하여 임명된 경우 장학지급 제외함

※ 입학성적 최우수자를 제외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한함

※ 공로장학(기타), 보훈장학, 생활보호장학, 다문화자녀장학, 다자녀가구장학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

※ 강원도민 기준: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 거주자

[별표 2] <개정 2017.3.22.>

<환수금액 기준표>

환수사유 발생일	환수기준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환수하지 아니함

※ 「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」제6조 제2항에 준하여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 산정

[별지 제2호 서식]〈개정 2016.4.25.〉

장학대상 (년 학기)

[illegible]